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- 0754호

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 - 64호

## 2024년도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「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」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5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 
방위사업청 청장 석 종 건  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

### <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역>

연번	보안 등급	지원분야	RFP명	선정 과제수	특기 사항
1	일반	공공기술	RFP2 : 항공·우주환경에 적합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레이더용 고신뢰성 전력증폭기 국산화 기술 개발	1	※ 붙임 RFP 참고

※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에서 접수

## 세부 목차

1. 사업 개요 .....	1
2. 지원 내용 .....	3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.....	5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.....	9
5. 신청기간 및 신청시 유의사항 .....	12
6. 선정기준 및 절차 .....	14
7. 기타사항 .....	16
8. [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] 기타사항 .....	18
9. 향후일정(안) .....	22
10. 적용법령 및 규칙 .....	22
11. 문의절차 및 문의처 .....	22

# 1

##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국가R&D 성과의 국방기술개발 연계를 위한 기술전환연구를 추진하고 국방 기술 획득 가속화, 국가R&D 성과활용 제고 및 투자효율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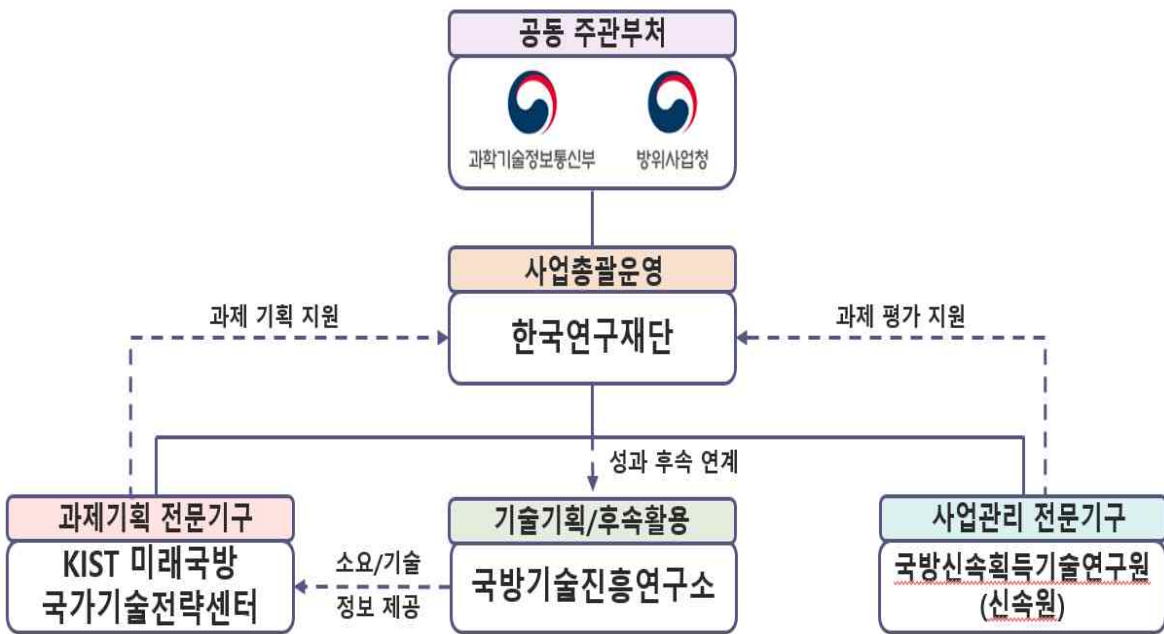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내용

- (지원대상)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(F+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)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군 소요 중심\* 핵심기술
  - \*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(국방기술기획서)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
  - (국가R&D연계)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&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 (민·군기술개발성과 포함)와 연계·활용이 가능한 기술
  - (신기술반영)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(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)
- (지원범위)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&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(시험개발 등)로 연계·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-응용기술개발(TRL 3~6)

<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범위 >



- (추진체계)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민-관 유기적 협업을 위해 총괄운영(民)-기획(民-軍)-과제관리(軍)로 역할분담 및 운영체계 구축



## 2

## 지원 내용

□ 지원 분야 : 1개 과제

연번	보안 등급	지원분야	RFP명	선정 과제수	특기 사항
1	일반	공공기술	RFP2 : 항공·우주환경에 적합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레이더용 고신뢰성 전력증폭기 국산화 기술 개발	1	※ 붙임 RFP 참고

□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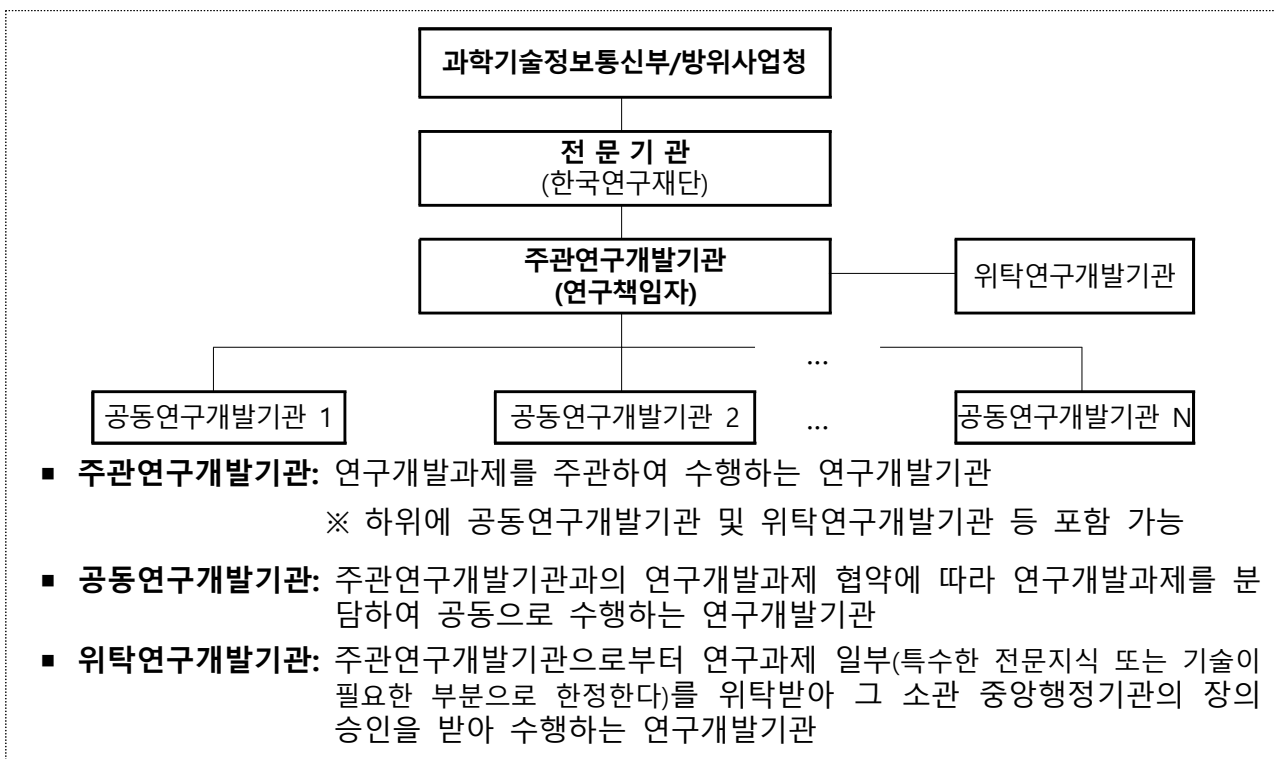
구분 (과제제안요구서명)	년도	연구기간	연구비
RFP2 항공·우주환경에 적합한 능 동위상배열안테나 레이더용 고신뢰성 전력증폭기 국산화 기술 개발	전체	30개월 (2024.7.1.~ 2026.12.31.)	3,000백만원
	1차년도	6개월 (2024.7.1.~ 2024.12.31.)	600백만원
	2차년도	12개월 (2025.1.1.~ 2025.12.31.)	1,200백만원
	3차년도	12개월 (2026.1.1.~ 2026.12.31.)	1,200백만원

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, 예산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. 또한,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

□ 연구내용 : 붙임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
□ 과제구성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



### 3

##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### □ 신청자격

#### 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**혁신법 제2조(정의) 3.**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**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  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 단,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**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3. 11., 2016. 3. 22., 2017. 7. 26.>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-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제15조 제2항

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<p><b>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</b>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</li> <li>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</li> <li>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</li> <li>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</li> <li>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</li> <li>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</li> <li>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</li> </ol> <p><b>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</b>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</li> <li>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</li> <li>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</li> </ol> <p>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</p>
---

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 공문 제출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

-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</li> <li>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</li> <li>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</li> <li>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</li> </ul> </li> <li>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
--
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□ 신청제한 사항
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, 3책 5공)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참고>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(3책 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

구분	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기관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기관	참여연구자	

※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

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-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미포함

**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5.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 -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  - 나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**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고시)**

**제4조(참여연구원 기준)**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(이하 “참여연구원”이라 한다)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.

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.

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.

- (참여제한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-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

- **(인건비 계상률\*)**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**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\*\**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\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

○ 계산식 = (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) / (연 급여)

\*\*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%(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),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%만 참여 가능

- **(중복신청 제한)**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(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)으로 본 사업 기준 1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신청·참여할 수 있음

-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

- **(과제구성 제한)**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

-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

\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 시, 법인인증서 사용)

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,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

연구개발기관 구분	사례1	사례2	사례3	사례4	사례5
주관연구개발기관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
공동연구개발기관1	B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	B기관	<b>B기관</b>
공동연구개발기관2	C기관	B기관	<b>B기관</b>	C기관	C기관
위탁연구개발기관	D기관	D기관	C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
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	가능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

- **(선정 우선순위 제출)** 복수의 과제 신청·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(별첨) 「3책5공(계상률)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」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

- **(위탁과제 제한)**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

-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(시작품 제작,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)

- **(유사과제 신청 제한)**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 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
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 로그인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

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
- **(기획위원 참여제한)** 과제제안요구서(RFP)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

## 4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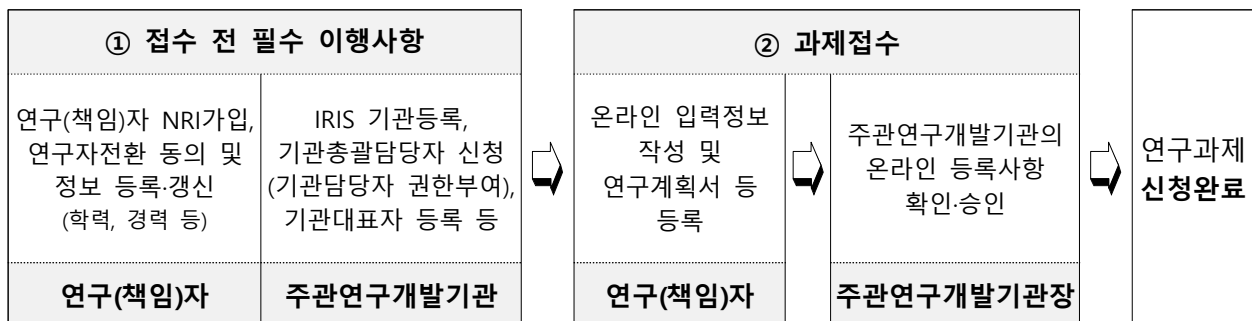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▶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\***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

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① **(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)**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·갱신
- ② **(과제 접수)**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[과제접수] 클릭 → [신청공고목록] 클릭 → 해당 정부부처(과기정통부) 및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 검색 → 해당 사업 공고 → 접수 →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

\* (1)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(HWP)과 (2) 기타증빙 1개 파일(PDF)로 각각 업로드(공동/위탁은 주관(단위)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, 별도로 공동/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계획서 제출)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-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**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**이 있으니,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참고> [별첨 3-1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  
[별첨 3-2]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, ③ NRI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의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\*\*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, 현재 수행·신청 중인 과제 목록

-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 또한 'IRIS 회원가입' 및 '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' 필수.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,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유의사항

- 1) 매뉴얼 : [별첨 3-3]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- 2) 과제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'00대학교 산학협력단'이 아닌, "00대학교"로 신청요망
- 3)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
–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,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어, 접수 마감까지 <00대학교>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

IRIS 홈페이지>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'최종확인' 완료 이후 '제출' 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

□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

-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의 재산으로 귀속되며,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-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은 이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□ 제출서류

○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증빙

< 제출서류 목록 >

구분	No.	제출서류명	주관	공동	위탁	제출방법		비고	파일 형태
						입력	업로드		
연구 개발 계획서	1	연구개발계획서(PART1, PART3) ※ 붙임파일은 온라인 입력 전 참고자료임	○	/	/	●	-	필수	-
		연구개발계획서(연구내용)(PART2)	○	/	/	-	●	필수	HWP
증빙 자료	1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○	○	●	-	필수	PDF
	2	대표 연구실적 증빙자료	○	○	/	-	●	필수	PDF
	3	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	○	○	○	-	●	필수	HWP
	4	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, 제3자 제공동의서	○	○	○	-	●	필수	PDF
	5	연구윤리 준수 서약서	○	○	○	-	●	필수	PDF
	6	3책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	○	○	/		●	해당 시	PDF
	7	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	○	○	/	-	●	해당 시	HWP
	8	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 계획	○	○	○		●	해당 시	PDF
	9	기관 지원 협약서	○	○	○		●	해당 시	PDF
	10	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	○	○	○		●	해당 시	PDF

※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, 연구계획서 제출 시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※ **기업 참여 시 필수 제출서류 [증빙10번]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바랍니다.**(최근 2년 재무제표 및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, (해당시)통합관제 기술 실증 사례 증빙 등)

※ 증빙 제출 시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, 스캔본으로 제출(사진 깨짐, 식별불가한 작은 증빙은 불인정)

※ 증빙자료는 IRIS시스템 제출 및 연구개발계획서(PART2) 내 작성 모두 필요

□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○ 목차 1. 연구개발의 필요성 ~ 4.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

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	계획서 분량	
	주관(단위) 과제	
연 5억원 미만	60P 이내	
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100P 이내	
연 20억원 이상	제한 없음	

※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## 5

##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## 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	2024.7.5.(금) ~ 2024.7.15.(월) 18:00까지
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	
신청 절차	연구자 신청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 신청완료,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·승인이 되어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

※ 연구책임자 신청기간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이 동일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IRIS 시스템에 사전 제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권장

- 연구책임자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주관연구개발기관: [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·승인을 완료하여야 함
- 상기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연구 개발계획서 접수 시 오류가 빈번(유효성검증 오류 등)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(마감기한 연장 불가)

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재공고 이후 단독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
  - ※ 다만, 예외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.
- 사업공고, 과제제안요구서(RFP)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 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과제제안요구서(RFP)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, 연구 성과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- 중간평가(연차단계)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,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/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함
  - ※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(‘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선정 후 주요 사항(주관/공동/위탁과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8호에 따라 국외수행정보를 포함해야 함

**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**

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⋮

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
- (해당 시) 3천만원~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
  - ※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’별도 심의 신청 필수
  - ※ 계획서상‘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’에 관련 내용 명시
- (해당 시)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
  - ※ 단,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,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
## 6

## 선정기준 및 절차

※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

### □ 평가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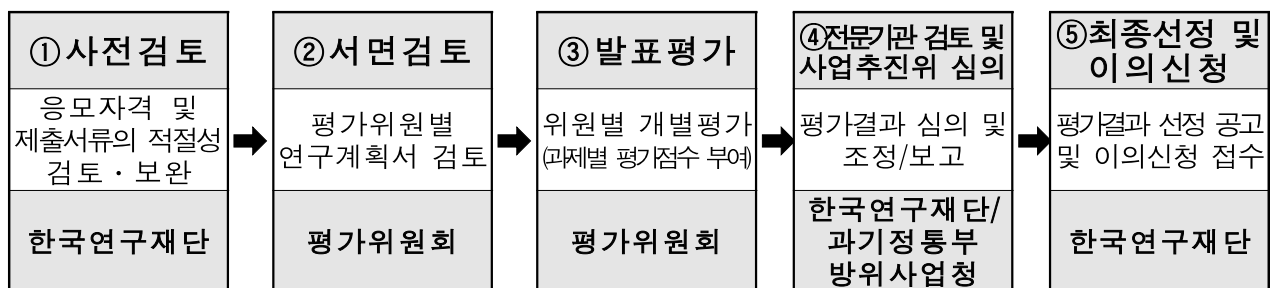
- 과제제안요구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
-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비대면 평가(화상평가, 온라인 서면평가)로 대체할 수 있음(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)
- 연구계획의 우수성, 추진체계의 적절성·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
-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### □ 평가방법 : 발표평가 (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)

※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
※ 필요시 발표평가 전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서면 및 발표 평가결과는 최종선정 공고 시 일괄 안내 예정

### □ 평가절차



※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

※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

- (사전검토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·단체·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

**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**시행령 제11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)**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
2.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

### ○ (전문가 평가) 서면검토 → 발표평가

- 평가방법 :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

※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

※ 과제별 선정평가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

○ 연구계획서 수정·보완 및 협약체결

-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

□ 평가지표

구분	평가항목	평가 내용	배점
연구개발계획 (50)	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(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연구개발계획이 RFP와 부합하는지</li> <li>● 연구목표 및 내용, 추진전략 및 방법이 적절한지</li> <li>● 예산 집행 계획이 적절한지</li> <li>● 제시된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 창출이 도전적인지</li> </ul>	50
	추진체계의 적절성·구체성 (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의 구성은 적절한지</li> <li>● 성과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추진체계가 적절한지</li> </ul>	
연구역량(20)	연구진 역량의 우수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존 R&amp;D성과 또는 기술력 확보 정도가 우수한지</li> <li>● 인력구성이 우수한지</li> </ul>	20
성과활용 (30)	성과 활용 가능성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최종 성과를 후속 연계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적인지</li> <li>● 동 과제 수행으로 기존대비 기간단축/예산절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</li> <li>● 예측되는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가</li> </ul>	30

※ 선정평가 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. 변경 시 연구책임자 별 안내 예정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\*으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선정

\* 성과활용 가능성(30)→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(25)→추진계획의 적절성·구체성(25)→연구진 역량의 우수성(20) 순

※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, 최소값을 제외한 산술평균값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※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□ 차별성 검토

- (차별성 검토)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활용하여 유사도 70점 이상 과제에 대하여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

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된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

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 로그인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

### 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 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####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**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**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~ 중략 ~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
### 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

-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  - 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- \*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 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)
- 단계 및 최종평가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,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
  - 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-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
  - 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### □ 보안 준수사항

-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, 수요기관 등의 보안업무 관련 세부규정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책임을 져야 함

### 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.

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
  -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    - ※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(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)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
-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(※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(02-737-8970~1))

\* **인간대상연구**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)

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-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\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(분양 대표전화 1661-9070)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.

\* 인체유래물 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□ (LMO 이용 시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>)확인

□ (해당시) 생명연구자원(소재+데이터) 기탁·등록 의무 이행

- 본 과제 선정 시, 산출되는 생명자원(생물자원 및 생명정보)을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», 「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·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  - ※ ‘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’(20.5.)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

□ (해당시) 젠더혁신 관점 연구

-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/젠더(성과 젠더, 성 또는 젠더)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(체크리스트)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

## □ 영리기관(기업 등)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

- 2024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하여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

## &lt;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&gt;

구분	일반적 적용
• 중소기업인 경우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
• 중견기업인 경우	연구개발비의 70% 이하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
## &lt; 총 연구개발비 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&gt;

구분	일반적 적용
• 중소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• 중견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## 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amp;D

## ①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

- 국가 R&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총액기준)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
- 주요내용
  - (대상기업) 연구개발과제(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)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,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
    - ※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
  - 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

구분	연구개발기관1(기업)	연구개발기관2(기업)	합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7억원	8억원	15억원
의무채용	3명(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, 기업 당 1명 이상)		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(신규채용 기준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  - ※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여는 가능
  - ※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
- (의무채용 시점)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, 부처·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\* 가능

\*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 5억원 초과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

- 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(3년간 지원)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3억원	3억원	4억원
의무채용	1명	1명	0명

※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

- (고용유지 기간) 최소 고용유지 기간 '1년 이상'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별,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(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)

○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※ 협약용 계획서 작성/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

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(중간점검)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

- (위반시)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\*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(既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

\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② R&D 매칭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

- (개념) 중소·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\*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

\* (예시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부담 감면, 현물부담으로 대체

○ 주요 내용

- (채용 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적용 대상)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·중견기업

※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,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

- (고용 유지) 1년 이상 고용 유지

※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

※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
※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
- (신규채용 기준)

- 신규과제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- 계속과제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- (현금부담 감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
- ※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 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
○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 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- ※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

- 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(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)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

- (요건 미충족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③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% 만큼 감면

- ※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

○ 주요 내용

- (대상 기업)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,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

- (채용 조건) 만 15세~34세의 정부 R&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신규채용 기준)

- 기술실시계약 체결 :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6개월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

- 직접 실시 :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

- 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,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

- (고용 유지)

- 기술실시계약 체결 :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

- 직접 실시 :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이후 2년(통보일 후 채용 시, 채용일로부터 2년)

- 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,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○ 실적 점검

- (기술실시협약) 기술실시계약 보고,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\*
  - \*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
  - \* 신규 인력 고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
- (기술료 등 감면)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 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
  -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
  -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
- (요건 미충족시)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\* 기술료 감면 미적용
  - \*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

## 9

### 향후 일정

일정	내용
2024.7.5.(금) ~ 2024.7.15.(월)	연구계획서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
2024. 7월	선정평가 실시
2024. 7월	사업 추진위원회 심의
2024. 7월 예정	협약체결 및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.

## 10

### 적용 법령 및 규칙

-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『과학기술기본법』, 『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』,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』, 행정규칙 『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』, 시행계획 『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』 을 적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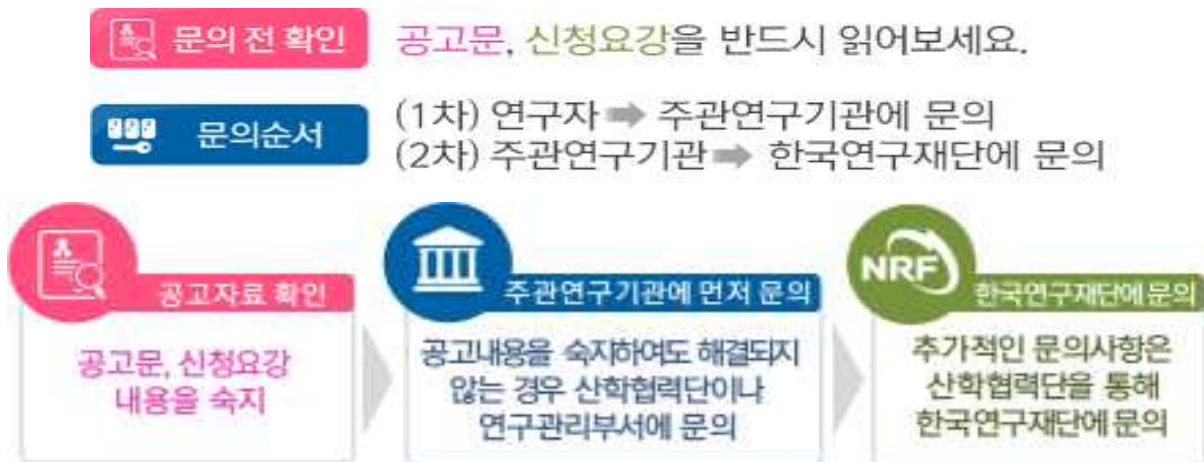
※ 원활한 사업관리 및 SE(System Engineering) 추진을 위하여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, 「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」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함.

## 11

### 문의처

#### □ 문의 절차

“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 
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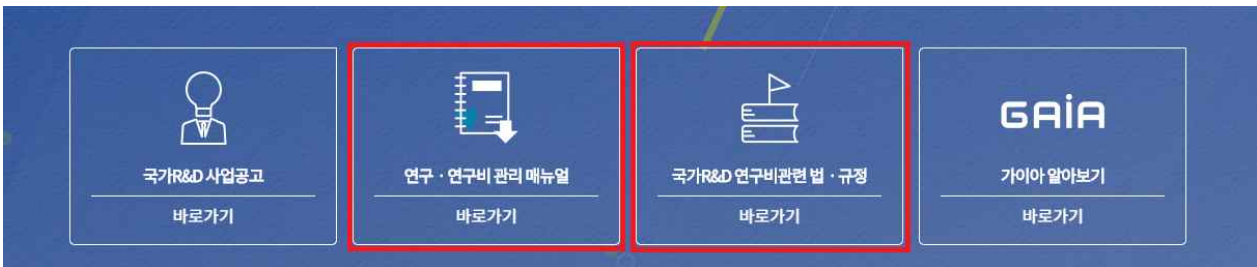


□ **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**

-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,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<https://msit.go.kr/>) 접속 → 소식 → 사업공고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/>) 접속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

□ **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**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- 법,규정,규칙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 →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’,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관련 확인
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

□ **문의처 :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**

○ (접수·RFP·평가 관련 문의)

구분	담당 부서	연락처	비고
(온라인 입력 및 제출 문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	IRIS 콜센터	1877-2041	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(접수 및 양식 문의) 과제 제안요구서(RFP)	공공기술단	042-869-7792, 7793, 7794	yjson@nrf.re.kr
(평가 문의)	국책사업평가1팀	042-869-7765	iq5555@nrf.re.kr

○ (정책 문의)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044-202-4626
-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-2079-6386

[붙임] 과제 제안요구서(RFP)

[별첨 1] 연구개발계획서 서식

○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서식

- (온라인 입력용) 연구개발계획서(PART1, PART3)
- (파일 업로드용) 연구개발계획서(연구내용)(PART2)

[별첨 2] 증빙자료 서식

[별첨 3] IRIS 관련 매뉴얼

-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(KISTEP IRIS운영단)
-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 정보 등록 매뉴얼
-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(대학 대상)
- IRIS 과제접수 매뉴얼(연구자용)